

2023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1897호, 제1898호
- 다. 제출일자 : 2024. 5. 27.
- 라. 회부일자 : 2024. 5. 30.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예비비 등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개요

가.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1) 세입결산

【일반회계】 해당없음

【소방특별회계】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정리보류	미수납액	수납률(% (B/A)
소방특별회계	977,242	983,108	986,444	986,129	33	282	100.0

- 세입 예산현액은 9,831억 8백 만원이었으나 실제 9,864억 44백 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 중 9,861억 29백 만원을 수납하고, 3천 3백만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2억 82백 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고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임.

2) 세출결산

【일반회계】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일반회계	945,505	-	-	-	-	-	945,505	945,505	-	-	-	-	0 (0.0%)

- 2023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9,455억 5백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455억 5백 만원을 모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원임.

【소방특별회계】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합계	1,920,376	5,866	511	-	298	2,410	1,926,242	1,897,984	726	-	726	127	27,405 (1.4%)
일반 회계	945,505	-	-	-	-	-	945,505	945,505	-	-	-	-	0 (0%)
특별 회계	974,871	5,866	511	-	298	2,410	980,737	952,479	726	-	726	127	27,405 (2.8%)

- 2023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9,455억 5백 만원과 소방특별회계 9,807억 37백 만원을 포함하여 총계예산 규모로 총 1조 9,262억 42백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98.5%인 1조 8,979억 84백 만원을 지출하고 0.04%인 7억 26백 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274억 5백 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 예비비

【일반회계】

-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예비비
 -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예비비 사용은 없음.

【소방특별회계】

- 이용
 - 예산 이용은 없음.

○ 전용

- 예산 전용은 2건에 2억 98백 만원으로
 - 송파소방서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4백 만원
 - 공무원 수당 직급 보조비 부족분 2억 94백 만원임.

○ 이체

- 예산 이체는 7건에 24억 1천 만원으로,
 -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 이관을 위한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관련 사무관리비 5십 만원, 공공운영비 6억 74백 만원, 전산개발비 4천만원, 시설비 16억 47백 만원과
 - 기본경비 관련 사무관리비 2백 4십 만원, 공공운영비 4천 7백 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십 만원으로 총 24억 1천 만원 임.

○ 변경

- 예산 변경은 없음.

○ 예비비

- 예비비 사용은 소방특별회계 1건에 5억 11백 만원으로
 - 국일고시원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5억 11백 만 원임.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7억 26백 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7억 26백 만원이며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조 9,262억 42백

만원 대비 0.04%임.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274억 5백 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조 9,262억 42백 만원 대비 1.4%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률 (%)	비고
2023	1,926,242	27,405	1.4%	

- 발생원인별 내역

- 지출 잔액 : 212억 67백 만원
- 낙찰차액 잔액 : 30억 19백 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3억 54백 만원
- 보조금정산 잔액 : 3억 14백 만원

4.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 1) 세입결산 : 해당없음
-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3	945,505						945,505	945,505					0
2022	893,165	-	-	-	-	-	893,165	893,165	-	-	-	-	0
2021	852,693	-	1,165	-	-	-	853,858	853,336	-	-	-	-	0.1

가) 집행잔액 (불용액) (결산서 p.19)

- 일반회계 세출은 전액 소방안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회계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전액 집행함.

나. 소방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2023	977,242	983,108	986,444	986,129	33	282	100.0
2022	945,971	950,036	950,046	949,831	13	202	100.0
2021	896,524	899,934	902,173	902,016	5	153	100.0

가) 개요

- 세입 예산현액은 9,831억 8백 만원이었으나 실제 9,864억 44 백 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 중 9,861억 29백 만원을 수납하고, 3천 3백 만원을 정리보류액 처리하였으며, 2억 82백 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고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임.

나) 세수추계 (결산서 p.37~40)

- 소방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현액 9,831억 8백 만 원 대비 33억 36백 만원이 증가한 9,864억 44 백 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일부 세입 중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간 세수추계의 차이가 3천 만원 이상 혹은 30% 이상 발생한 항목들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과다한 항목

(단위 : 천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c) (b-a)	증감률 (c/a*100)	비고
경상적 세외수입						
공 유 재 산 료 임 대 료	219,154	258,766	224,577	39,612	18.1	은평소방서 녹변119안전센터 공유 재산 임대료 납부 기준일을 회계기간에 맞춰 변경 - 예산추계 (1년 임대료) : '23.3.23 ~ '24.3.25. - 변경 후 (연도별) : '23.3.26. ~ '24.12.31.
기 타 사 용 료	56,997	75,219	75,219	18,222	32.0	소방학교 정상 운영(코로나 종식)에 따른 기타사용료(주차요금) 수입 증가
증 지 수 입	88,391	51,643	51,643	△36,748	△41.6	예산추계 대비 민원실 증지수입(방염처리 성능검사, 위험물 인·허가 등) 감소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c) (b-a)	증감률 (c/a*100)	비고
기타사업수입	41,565	60,232	60,232	18,667	44.9	코로나19로 축소 운영했던 현장지휘관 양성 전문교육과 교육여행 교사 안전교육, 소방안전실무교육 등의 수탁교육이 정상 운영
공공예금이자수입	167,435	768,279	768,279	600,844	358.9	특별회계 조기 전출 집행으로 소방특별회계정기예금 가입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기타이자수입	56,756	36,325	36,325	△20,431	△36.0	법인카드통장 등 이자수입으로 추계 대비 평균잔고의 감소
임시적 제외수입						
불용품매각	274,900	317,062	317,062	42,162	15.3	추계대비 불용품 매각 수입 증가 - 불용차량 매각 단가 증가
위약금	202,346	19,198	19,198	△183,148	△90.5	경기 등 영향을 받아 예측이 어려워 최근 5년('21~'17년)간 평균위약금액으로 추계하였으나, 코로나 종식으로 업체들의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수입 금액 감소
그외수입	415,853	1,447,042	1,424,654	1,031,189	248.0	각종 잡수입으로 예측이 곤란하여, 예산추계 시 최근 5년간징수액에서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징수액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나, 과오납 및 각종 정산 환급금, 감사결과 환수금 등 증가
지난연도수입	17,700	211,639	55,745	193,939	1,095.7	납부독촉 및 적극적인 압류에도 납세태만, 무재산 등 체납으로 지난연도수입 증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	42,884	117,420	117,420	74,536	173.8	○ 최근 5년간('21~'17년) 징수액에서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징수액으로 추계하였으나, 추계 대비 부과액 증가
이행강제금	12,170	30,000	0	17,830	146.5	○ '21년 징수액이 없어 최근 5년간('20~'16년) 징수액에서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징수액으로 추계하였으나, 부과 금액 증가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c) (b-a)	증감률 (c/a*100)	비고
기 타 과 태 료	471,613	903,035	830,512	431,422	91.5	연간 징수액 차이가 크지 않아 최근 3년간('20~'18년) 평균징수액으로 추계하였으나 추계 대비 과태료 부과액의 증가
보전수입 등						
민 간 용 자 금 회 수 수 입	2,446,000	3,539,000	3,539,000	1,093,000	44.7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용자금 지원 중도상환액의 증가

- 정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예산액 2억 19백 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2억 59백 만원으로 4천 만원(18.1%)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은평소방서 녹번 119안전센터가 은평구청과 임대계약한 사회적경제허브센터(23.3.26.~24.3.25.), 스토어36.5(23.11.11.~24.11.10.), 녹번만화센터(23.12.29.~24.12.19.)의 계약기간을 하나의 회계연도로 조정하면서 23년 잔여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추가 징수한 것으로
- 하나의 회계연도로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를 가능하게 한 것은 긍정적인 조치라 하겠음.

[표] 공유재산 임대료 현황

(단위 : 천원)

임차기관	운영시설	(변경 전) 계약기간	(변경 후) 계약기간	총계약일수 (연장일)	예산액	총징수액	징수세부내역	
							징수액	추가징수액
은평구청	사회적경제허브센터	2023.03.26.~2024.03.25.	2023.03.26.~2024.06.30.	462일 (97일)	146,692	185,637	146,657	38,980
	스토어36.5	2023.11.11.~2024.11.10.	2023.11.11.~2024.12.31.	416일 (51일)	33,825	37,253	32,675	4,578
	녹번만화센터	2023.12.20.~2024.12.19.	2023.12.20.~2024.12.31.	377일 (12일)	6,718	6,358	6145	213
신한은행	신한은행	2023.1.1.~2023.12.31		365 (0)	31,919	29,518	29,518	-
합계					219,154	258,766	214,995	43,771

- 기타사용료는 예산액 5천 7백 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7천 5백 만원으로 1천 8백 만원(32.0%)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3년 5월 코로나19 종식 이후 소방학교 전문 및 수탁 교육생('22년 777명 → '23년 2,401명)이 크게 늘어나 부설주차장 수입이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표] 최근 3년간 기타사용료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c) (b-a)	증감률 (c/a*100)	비고
2023	56,997	75,219	75,219	18,222	32.0%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소방학교 운영 정상화로 주차수입 증가
2022	16,893	62,323	62,323	45,430	268.9%	소방학교 부설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설치('21년 12월)로 수납액 증가
2021	22,895	9,418	9,418	△13,477	△58.9%	코로나19로 인한 기타사용료(광나루안전체험관 강당 대관료 등) 수입 감소, 소방학교 부설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지연으로 수납액 감소

[표] 최근 3년간 소방학교 전문·수탁교육비 징수 세입 현황

(단위 : 명, 천원)

과정명	연도별	2023		2022		2021		주위탁기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2,401	60,232	777	41,576	0	0	
전문교육	현장외상소생술	6	2,267	0		코로나19로 인한 미운영		세종
	지하철재난대응과정	2	1,084	0				인천
	현장지휘관양성(초급, 중급, 고급)	85	9,687	22	7,022			부산, 대구, 인천
수탁교육	기초소방안전실무 I, II	176	10,312	135	7,382			서울교통공사, (주)두산, (주)CJ
	전기차화재 초기진화	22	1,885	0				삼성전자
	외국소방관 현장실무	0		18	2,42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학교안전책임관 소방안전실무	1,025	16,150	258	7,743	서울시교육청		
	교육여행교사 연수과정	1,085	18,847	344	17,000	서울시교육청		

- 코로나19 거리두기가 '22.4.18.일에 해제되어 소방학교 교육이 다시 진행되었음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편성 시점에서 차년도 교육인원 증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 주차수입에 대한 세입예산 추계를 계상치 못하여 이처럼 세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를 크게 한 것은 신중치 못한 세입추계라 여겨지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증지수입은 예산액 8천 8백 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5천 1백 만원으로 3천 7백 만원(41.6%)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23년에 코로나19 확산 이전 3년간('19년~'17년)의 민원실 증지수입 평균치로 추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주변 환경변화와 사업 변동성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세입추계 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표] 최근 5년간('23 ~ '19) 증지수입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2023	2022	2021	2020	2019
합계		51,643	51,176	54,286	61,539	82,374
	방염성능시험 의뢰	30,880	34,880	35,140	42,980	61,520
	위험물 취급 승인등	10,627	10,441	12,650	10,387	13,625
	소방시설업등록 등	9,940	5,660	6,300	7,600	6,850
	기타(정보공개청구등)	196	195	196	572	379

- 기타사업수입은 예산액 4천 2백 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6천 만원으로 1천 8백 만원(44.9%)이 증가하였는데,
 - 그 사유는 코로나19로 축소 운영했던 현장지휘관 양성 전문교육과 교육여행 교사 안전교육, 소방안전실무교육 등의 수탁교육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23년도 교육인원(2,401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 향후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안전교육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표] 최근 3년간('23 ~ '21) 기타사업수입 세입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 도	2023년		2022년		2021년	
	교육인원	금 액	교육인원	금 액	교육인원	금 액
인원 및 금액	2,401	60,232	777	41,576	0	0

-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예산액 1억 67백 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6억 1백 만원(358.9%)이 대폭 증가한 7억 68백 만원으로 소방 특별회계의 평균 잔고액과 잉여자금 정기예금가입에 따른 이자 수입액이 증가함에 기인한 것임.

[표] 최근 5년간('23 ~ '19) 공공예금이자수입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2023	2022	2021	2020	2019
합계	768,279	836,483	66,932	70,378	132,637
세출계좌 이자	351,517	208,008	66,932	70,378	132,637
정기예금 이자	416,762	628,475	0	0	0

- 상기 [표]와 같이 정기예금이자 수익이 발생한 것은 당초 서울시 재무과가 「지방회계법」 제39조(세계현금의 전용)에 따라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시켜 발생한 이자를 시세입으로 확보하고 있었으나, '23.11월에 여유자금 부족을 근거로 일반회계 전용자금 잔액을 소방특별회계로 조기 전출하면서 발생한 이자분에 해당함.
- 이와 같이 조기 전출로 인한 이자수익 발생은 다소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나 다만, 같은 이유로 '22년도에도 정기예금 이자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서울시 세수 전망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기타이자수입은 법인신용카드 결제통장 등에서 발생한 이자로 예산 추계 시 최근 5년(최고, 최저 제외) 평균액에서 '23년도 신한은행 금리 인상분¹⁾(1.52%→2.52%)을 반영한 5천 6백 만원 편성하였으나 징수액은 3천 6백 만원으로 예산 대비 2천 만원(36.0%) 감소하였음.

[표] 최근 5년간('23 ~ '21) 기타이자수입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수납액	36,325	29,000	31,009	40,472	31,243

1) 2023년 공공예금 적용 금리 : 2.52% (22년말까지 1.52%에서 인상)

○ 다음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중 불용품매각대금은 소방차량, 기타물품 등의 노후화에 따라 그 용도를 폐기한 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예산액 2억 75백 만원 대비 4천 2백 만원(15.3%) 증가한 3억 17백 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 주요 증가 사유는 '23년도 불용차량 매각단가를 통해 예측한 전망액(2억 49백만원)보다 실제 낙찰가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징수법」 제88조제3항²⁾에 따라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공매의 특성상 세입액의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세입예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최근 매각가액 등을 반영한 매각단가의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 보임.

[표] 2023년 불용차량매각대금 세입 현황

(단위 : 대, 천원)

구분		2023년 예산추계			실제 매각 세입	
내용연수	차종	매각대수	평균매각단가	징수전망	매각대수	세입금액
계		60	65,500	249,000	58	313,996
12년	고가차	1	9,000	9,000	1	14,360
	굴절차	7	9,000	63,000	7	70,610
	조명배연차	4	9,000	36,000	4	41,183
10년	펌프차	11	7,000	77,000	12	81,701
	화학차	2	9,000	18,000	2	1,500
8년	행정차 등(이륜차포함)			0	3	22,620
	구조공작차	2	9,000	18,000	2	19,200
	구조버스	1	3,000	3,000	1	2,000
	홍보차	1	5,000	5,000	0	0
	이동안전체험차	1	5,000	5,000	0	0
5년	구급차	30	500	15,000	25	55,272
7년	수상오토바이				1	5,550

2) 「지방세징수법」 제88조(입찰과 개찰) ①~② (생략)

③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하생략)

- 위약금은 업체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 및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예산액 2억 2백 만원 대비 1억 83백 만원(90.5%) 감소한 1천 9백 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표] 2023년 위약금 및 지연배상금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방관서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금액	징수금액	지체일수	비고
1	특수구조단	특수구조대 다목적 인명구조 훈련장 건립공사	공개입찰(제한경쟁)	339,720	6,455	38	지연배상금
2	서대문소방서	서대문소방서 공간확보를 위한 증축공사	전자공개	316,411	4,476	31	지연배상금
3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관 호흡 및 피부보호장비 구매	전자공개	86,191	3,516	51	지연배상금
4	소방학교	소방학교 교육용 구급기자재 구매	공개입찰(제한경쟁)	89,666	2,009	28	지연배상금
5	서대문소방서	서대문소방서 119상황실 정보통신공사	전자공개	93,558	1,459	32	지연배상금
6	소방학교	소방학교 공기용기보관함 등 20종 31점 구매	공개입찰(제한경쟁)	86,802	756	42	지연배상금
7	소방재난본부	구급차 병원성 세균검사 용역	전자공개	18,107	212	9	지연배상금
8	도봉소방서	긴급출동신호제어시스템 설치 (교통신호기 공사)	수의계약	37,466	169	9	지연배상금
9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 노후 차고문 교체공사	조달구매	48,800	146	4	지연배상금
합 계				1,116,721	19,198		

※ 전체 지연배상금 9건 중 공개입찰(제한경쟁) 3건, 조달구매 1건, 수의계약 1건, 전자공개 4건

- 이는 예년에 비해 위약금 등의 발생이 줄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상기 [표]의 지연배상금 건 중 지체일수가 38일인 ‘다목적 인명구조 훈련장 설치공사’ 사업은 시공업체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지연³⁾으로 계약기간 내(’22.8.2~12.23.)내 준공(’23.1.30.준공)하지 못해 해당 업체에게 지연배상금 6백 45만원을 징수한 것임.

3) 공정을 85%에서 공사지연이 발생하여 독촉문서 5회 발송함,
2023년(2월9일) 지체상금 부과: 지체일수 38일, 6,450,000원

- ‘서대문소방서 공간확보를 위한 증축공사’건은 공사 당시 철골기둥 규격이 설계도면과 일부 다르게 시공된 것을 확인하여 이를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31일 연장된 것이며,
- ‘화재조사관 장비구매(호흡 및 피부보호장비)’건의 경우 계약업체가 정해진 납품 일자에 물품을 확보하지 못해 51일 동안 납품이 지연되어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것임.
- 다음으로, ‘소방학교 교육용 구급기자재 구매’건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생산공장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구매한 전문제세동기 등 2종 7점의 28일의 지체일수가 발생한 것이며,
- 이 외에도 ‘서대문소방서 119상황실 정보통신공사(146만원)’, ‘소방학교 공기용기보관함 등 20종 31점 구매(76만원)’, ‘구급차 병원성 세균검사 용역(21만원)’, ‘긴급출동신호제어시스템 설치(17만원)’, ‘현장대응단 노후 차고문 교체공사(15만원)’를 포함하여 ‘23년도 지연배상금(1천 9백 만원)을 징수함.
- 한편, 최근 3년간 위약금 및 지연배상금을 보면, 2021년 1억 23백 만원, 2022년 4천 4백만원, 2023년 1천 9백만원으로 감소세가 뚜렷하여 고무적이라 생각되나 반면, 지연건수와 지체일수는 전년 대비 다시 증가되고 있어 소방장비 보급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업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 최근 3년간('23 ~ '21) 위약금 및 지연배상금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	징수결정액	위약금 및 지연배상금 현황		
			건수	지체일수 (연 누적일)	수납액
2023년	220,346	19,198	9건	244일	19,198
2022년	213,396	43,692	5건	97일	17,229
2021년	216,645	122,631	11건	581일	122,631

- 다음으로, 그외수입은 일반 세입과목에 속하지 않는 기타잡수입으로 예산액 4억 16백 만원 대비 10억 31백 만원(248.0%) 증가한 14억 47백 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표] 최근 5년간 그외수입 수납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2023	2022	2021	2020	2019
예산액(a)	415,853	527,682	299,484	266,207	377,215
징수결정액(b)	1,447,042	917,952	778,741	498,580	276,654
차액(c=b-a)	1,031,189	390,270	479,257	232,373	△100,561
증감률(c/a*100)	248.0%	74.0%	160.0%	87.3%	△26.7%

- 주요 증가 사유는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관련하여 법원의 행정소송 종결로 기존 가지급 된 초과근무수당에서 9억 98백만 원의 휴일병급 수당을 환수한 것으로,

- 당초 2012년 1심⁴⁾ 법원에서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430억원의 수당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항소를 통해 2019년 대법원에서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하는 판결⁵⁾이 나왔으나,
- 이후 청구원인 변경을 통한 휴게 및 비번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추가되어 서울시는 시장방침 제207호('22.11.25.)⁶⁾을 수립하였고, '23.12.06.일 대법원의 최종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기존 휴일병급 수당 환수(9억 98백 만원) 및 미지급 수당 지급(94억 8천 만원)하여 최종 종결하였음.
- 서울시를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이 제기된 이후 오랜 기간 진행해 오던 관련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그동안 정산 지연으로 인한 이자액 증가 등 재정적 부담과 소방본부와 소방공무원의 갈등을 해소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4) 서울중앙지법 1심판결('11.11.17)

- 인용 : ① 실제 근무한 시간외근무 모두지급(비번일 포함) ②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병급 인정
③ 휴게(식사)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에서 미공제
- 기각 : 순번휴무를 휴가로 인정

5) 대법원 판결('19.10.17.)

- 인용 : ① 실제 근무한 시간외근무 모두지급(비번일 포함), ② 휴게(식사)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에서 미공제
- 기각 : ①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 인정 ② 순번휴무를 휴가로 인정

6)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환수계획(2022.11.25. / 시장방침 제207호)

[표]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 관련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소송제기 ('09.12.02.)	-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제기(13건 / 1,440명) *향후 20건으로 증가																								
중앙지법 1심 판결 (11.11.17.)	① 실제 근무한 시간외근무 모두 지급(비번일 포함) ②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병급 가능 ③ 휴게(식사)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에서 미공제																								
판결금 가지급 ('11.11.23.)	- 430억 지급('06.12월~'10.5월 수당)																								
대법원 판결 ('19.10.17.)	① 실제 근무한 시간외근무 모두 지급(비번일 포함) ② 휴게(식사)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에서 미공제 ③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병급 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21.01.15.)	① 휴게 및 비번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② 공동근무시간(청구확장)																								
수당 정산 방침 ('22.11.25. / 시장방침 제207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환수 계획(2022.11.25. / 시장방침 제207호) ① 휴일병급액 환수 ② 공동근무수당 지급 등																								
화해권고결정 종결 ('23.12.06.)	서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휴일병급 수당 환수 및 미지급 수당 지급 (지급)94.8억원 1,208명 / (환수) 9억 98백만원 194명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원고</th> <th>법원</th> <th>사건번호</th> <th>세부 정산내역</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강○민 등 464명</td> <td>서울행정</td> <td>2012구합39278</td> <td>(지급) 45.1억·433명 / (환수) 0.4억·18명</td> </tr> <tr> <td>2</td> <td>윤○원 등 740명</td> <td>서울고등</td> <td>2022누80</td> <td>(지급) 38.8억·617명 / (환수) 4.5억·99명</td> </tr> <tr> <td>3</td> <td>김○우 등 228명</td> <td>서울고등</td> <td>2021누77229</td> <td rowspan="2">(지급) 10.9억·158명 / (환수) 5.1억·77명 ※ 두 사건 대부분 원고 일치하여 상계 정산함</td> </tr> <tr> <td>4</td> <td>김○우 등 250명</td> <td>서울행정</td> <td>2014구합786</td> </tr> </tbody> </table>	연번	원고	법원	사건번호	세부 정산내역	1	강○민 등 464명	서울행정	2012구합39278	(지급) 45.1억·433명 / (환수) 0.4억·18명	2	윤○원 등 740명	서울고등	2022누80	(지급) 38.8억·617명 / (환수) 4.5억·99명	3	김○우 등 228명	서울고등	2021누77229	(지급) 10.9억·158명 / (환수) 5.1억·77명 ※ 두 사건 대부분 원고 일치하여 상계 정산함	4	김○우 등 250명	서울행정	2014구합786
	연번	원고	법원	사건번호	세부 정산내역																				
	1	강○민 등 464명	서울행정	2012구합39278	(지급) 45.1억·433명 / (환수) 0.4억·18명																				
	2	윤○원 등 740명	서울고등	2022누80	(지급) 38.8억·617명 / (환수) 4.5억·99명																				
3	김○우 등 228명	서울고등	2021누77229	(지급) 10.9억·158명 / (환수) 5.1억·77명 ※ 두 사건 대부분 원고 일치하여 상계 정산함																					
4	김○우 등 250명	서울행정	2014구합786																						

○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도 누적된 체납액이 이월된 수입으로 예산액 1천 8백 만원 대비 1억 94백 만원(1,095.7%)이 증가한 2억 12백 만원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 이는 예산편성이 완료된 다음연도 1월에 과태료, 체납액 등의 징수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세입예산액을 추계함에 있어 가급적 징수 가능한 체납액 위주로 산정하되 체납액

징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의지를 담아 적극적으로 예산액을 편성할 필요가 하겠음.

- 한편, 최근 4년간 체납액에 대한 이월사유별 미수납내역을 살펴보면, 납세태만이 58.4%(41건, 7천 2백 만원)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무재산 27.1%(11건, 3천 3백 만원), 행방불명 7.6%(6건, 9백 만원), 폐업 또는 부도 6.9%(2건, 8백 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참조)

[표] 지난연도수입 부과년도별 미수납내역

(단위 : 천원)

미수납사유	합계		부과년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9년 이전	
합 계	77건	123,340	21건	29,859	13건	11,969	9건	12,673	17건	41,312	17건	27,526
무재산	11건	33,420	3	3,097	1	599	4	8,532	3	14,083	2	7,108
행방불명	6건	9,401			2	1,359	1	467	3	4,099	1	3,476
납세태만	41건	72,044	16	26,163	10	10,011	4	3,674	11	23,130	10	9,065
폐업 또는 부도	2건	8,475	2	599							4	7,877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0건	0										
추기 또는 입원	0건	0										
소송계류	0건	0										

- 이처럼 고질적 체납이 누적되면서 누계체납액을 증가시켜 결국에는 정리보류액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수납을 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지방행정체제·부과금 중 과징금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사항을 위반⁷⁾시 부과되는 것으로, 예산액 4천 3백 만 원 대비 7천 4백 만원(173.8%) 증가한 1억 17백 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표] 최근 5년간('23 ~ '19) 과징금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평균	2023	2022	2021	2020	2019
과징금 예산액	33,425	42,884	40,078	33,977	29,175	27,642
징수결정액	57,834	117,420	69,300	53,820	79,970	42,965
부과건수	15건	4건	14건	12건	17건	10건

- 이는 세입예산 추계 당시 최근 5년간('21 ~ '17)을 기준으로 각 연도별 징수합계액에서 최고·최저 금액을 제외한 평균 징수액으로 편성하였으나, 과징금 산정의 경우 업체의 영업정지 기간(일)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각 구간별 범위 내 1일 과징금 금액⁸⁾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부과함에 따라 변동 폭이 크게 발

7) ※ 과징금 부과 예시: 하도급 제한 위반, 착공신고 위반, 소방시설 설계 시 화재안전기준 위반, 소방기술자 공사 현장 미배치 등

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호 관련)

1. 일반기준(생략)
2. 개별기준

등급	연간 매출액	1일 과징금 금액(단위: 원)
1	1억원 이하	10,000
2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20,500
3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4,000
4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5,000
5	5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80,000
6	7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0,000
7	10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120,000
8	13억원 초과 ~ 16억원 이하	140,000
9	16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60,000
10	20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180,000

생해 예산편성액 대비 증가한 것임.

- **이행강제금**⁹⁾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비상구 훼손 또는 내부구조 임의 변경 등)으로 원상복구 조치명령과 함께 부과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예산액 1천 2백 만원 대비 1천 8백 만원(146.5%) 증가한 3천 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표] 최근 5년간('23 ~ '19) 이행강제금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평균	2023	2022	2021	2020	2019
이행강제금 예산액	11,565	12,170	11,416	17,625	10,616	6,000
징수결정액	11,250	30,00	16,000	0	10,000	19,000
부과건수	2건	3건	2건	0건	1건	4건

- **기타 과태료**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

11	2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00,000
12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220,000
13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40,000
14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260,000
15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280,000
16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370,000
17	1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515,000
18	20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736,000
19	3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1,030,000
20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1,058,000
21	1,000억원 초과 ~ 5,000억원 이하	1,068,000
22	5,000억원 초과	1,100,000

9) ※ **이행강제금** : 수인의무의 불이행시에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미리 통지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주어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간접적 강제수단
예)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훼손 및 내부구조 임의 변경 등으로 인한 위법 사항에 원상복구 조치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

중이용업소의 안전과리에 관한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등 소방 관련 법령의 위반 시 부과하는 것으로, 예산액 4억 72백 만원 대비 4억 31백 만원(91.5%) 증가한 9억 3백 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표] 최근 5년간('23 ~ '18) 과태료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평균	2023	2022	2021	2020	2019
과태료 예산액	460,529	471,613	460,156	459,235	449,710	461,930
징수결정액	619,839	903,035	686,421	550,330	456,805	502,605
수 납 액	580,213	830,512	655,714	508,255	437,658	468,926
부과건수	1,108건	1,325건	1,193건	1,135건	822건	1,066건

- 이는 예산추계 대비 부과 건수 및 금액의 증가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최근 5년간('23~'19)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소방특별관리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위법사항 적발 시 관용 없는 처벌이 요구되는 한편 대시민 준법 홍보 등이 병행 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보전수입 중 민간용자금회수수입은 무주택 소방공무원의 전세용자금에 대한 중도상환액으로 예산액 24억 46백 만 원 대비 10억 9백 만원이(44.7%) 증가한 35억 39백 만원 징수 결정 되었는데,

- 이는 당초 예상했던 상환 인원 및 금액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예산편성에 앞서 시중금리의 변동과 상환계획에 대한 사전조사를 보다 면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최근 3년간('23 ~ '21) 민간용자금 회수수입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예산액	수납 금액	상환 인원	예산액 대비 수납률
2023		2,446,000	3,539,000	49명	144.7%
2022		3,420,000	1,805,000	54명	52.8%
2021		2,133,000	3,420,000	52명	160.3%

다) 정리보류 (결산서 p.37 ~ 40 p.117)

- 소방특별회계 정리보류는 11건(3천 3백 만원)으로, 이 중 6건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제2항¹⁰⁾에 따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 경과)가 완성되어 정리보류한 것이고, 5건은 동법 시행령 제94조(정리보류)¹¹⁾에 따라 무재산의 이유로 정리보류 처리한 것이기는 하나,

10)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 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1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정리보류)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표] 정리보류액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소방서	체납 금액	최초 부과 연월	정리보류 사유	부과 세입과목 / 사유
1	중부	1,750	2018-04	시효소멸	사업장 폐쇄로 대표자 및 사업자 재산조회(차량,부동산) 결과 무재산으로 5년 경과하여 시효소멸
2	중부	3,500	2018-04	시효소멸	사업장 폐쇄로 대표자 및 사업자 재산조회(차량,부동산) 결과 무재산으로 5년 경과하여 시효소멸
3	마포	1,750	2018-04	시효소멸	사업장 폐쇄로 대표자 및 사업자 재산조회(차량,부동산) 결과 무재산으로 5년 경과하여 시효소멸
4	광진	2,636	2021-05	무재산	사업장 폐쇄 및 본인 사망으로 체납액 징수 불가하여 정리보류 처리함
5	송파	869	2018-03	무재산	소유재산(부동산,차량) 멸실 및 저당으로 압류 불가하고, 질병으로 무수입, 고시원거주등 생활고로 징수불가
6	송파	1,258	2021-07	무재산	사업장 폐쇄 및 소유재산(차량) 저당으로 압류불가하며 사업자 소재거주지 불명으로 정리보류 처리함
7	송파	16,772	2021-12	무재산	체납자 자택방문, 재산조회(차량,부동산) 등 진행하였으나 무재산 및 행방불명으로 5년 경과하여 시효소멸
8	송파	862	2020-04	무재산	사업장 폐쇄 및 소유재산(차량) 저당으로 압류불가하며 사업자 소재거주지 불명으로 정리보류 처리함
9	중랑	531	2016-05	시효소멸	사업장 폐쇄로 대표자 및 사업자 재산조회(차량,부동산) 결과 무재산으로 5년 경과하여 시효소멸
10	강남	875	2018-05	시효소멸	사업장 폐쇄로 대표자 및 사업자 재산조회(차량,부동산) 결과 무재산으로 5년 경과하여 시효소멸
11	강남	1,750	2017-11	시효소멸	사업장 폐쇄로 대표자 및 사업자 재산조회(차량,부동산) 결과 무재산으로 5년 경과하여 시효소멸

- 최근 3년간 정리보류액 현황을 보면 증가 추세가 뚜렷하여 정리보류 처리하기 전 재산조회 및 행방조사를 더욱 철저히 실시하여 부적절한 정리보류 처분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표] 최근3년간 ('23~21년) 정리보류액 현황

(단위 : 천원 / 건수)

구분	연도별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보류액	건수	보류액	건수	보류액	건수
정리보류액		32,554	11건	12,781	10건	4,602	3건
	시효소멸	10,156	6건	10,025	9건	4,602	3건
	무재산	22,398	5건	2,756	1건	-	-

라) 미수납액 (결산서 p.37 ~ 40, p.121)

- 미수납액은 2억 82백 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세 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소방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사유	과목	계	공유재산임대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이행강제금	과태료
미수납액		282,441	34,190	22,389	123,340	30,000	72,522
		100%	12.1%	7.9%	43.7%	10.6%	25.7%
	무재산	45,492			33,420	10,000	2,072
	행방불명	10,520			9401		1,119
	납세태만	164,627		21,789	72,044	20,000	50,794
	폐업 또는 부도	9,530			8,475		1,055
	자금압박	2,156					2,156
	납기미도래	47,089	34,190	600			12,300
	소송계류	2,000					2,000
	기타(분할납부)	1,027					1,027

- 상기 [표]의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된 세입과목 중 지난연도수입(43.7%)이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미수납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58.2%), 납기미도래(16.7%), 무재산(16.1%)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납세태만 체납자의 경우 고의체납의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수납 독려와 체납관리를 통해 이월액을 줄여야 할 것임.

마) 환급액(결산서 p.37~40, p.125)

- 환급액은 184만 5천원으로 최근 3년간 환급액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다음 [표]에서 보여주듯이 환급액 발생 세부사유가 대부분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업무관련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임.

[표] 최근 3년간('23~'21) 세입결산 중 환급액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환급액	행정기관	납세자	기타
				착오	관리구제	
2023	986,444,210	986,129,215	1,845	1,845		
			2건	2건		
2022	902,173,485	902,015,562	815	735		80
			4건	3건		1건
2021	902,173,485	902,015,562	385	385		
			3건	3건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순계규모)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3	974,871	5,866	511 (-511)	-	298 (-298)	2,410	980,737	952,479	726		726	127	27,405 (2.8%)
2022	945,971	4,065	2,746 (-2,746)	1,879 (-1,879)	126 (-126)	-	950,036	923,149	5,866		5,866	1,728	19,293 (2.0%)
2021	896,523	3,411	-	-	699 (-699)	-	899,934	857,931	4,065	738	3,327	157	37,781 (4.2%)

가) 개 요

○ 2023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9,455억 5백 만원과 소방안전특별회계 9,807억 37백 만원(순계예산¹²)을 포함하여 총 1조 9,262억 42백 만원(총계예산¹³)으로 이 중 지출액은 총계규모로 1조 8,979억 84백 만원이고 순계규모로 9,524억 79백 만원임.

- 순계규모 기준 다음연도 이월액은 0.1%인 7억 26백 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274억 5백 만원에 해당함.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43~57)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274억 5백 만원이며, 불용률 1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은 '소방행정과 기본

12) 순계예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회계간 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를 말함.

13) 총계예산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 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를 말함.

경비' 등 32건임. ([표]참조)

[표] 불용률 1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불용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	불용액	비율(%)	
1	소방행정과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	2,065	1,720	37		308	14.9%	
2	소방행정과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 보수	13,028	12,576			452	3.4%	
3	소방행정과	가산119안전센터 신설	100	88			12	12.0%	
4	소방행정과	소방활동지원	32,749	32,191			558	1.7%	
5	소방행정과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1,036	905			131	12.6%	
6	소방행정과	기본경비(소방정책비계정)	23,326	21,613			1,713	7.3%	
7	소방행정과	인력운영비(인건비계정)	708,437	694,720			13,717	1.9%	
8	소방행정과	인력운영비(소방정책비계정)	23,852	21,915			1,937	8.1%	
9	재난대응과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4,241	4,060			181	4.2%	
10	재난대응과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5,732	5,519			213	3.7%	
11	재난대응과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2,531	2,194			337	13.3%	
12	재난대응과	구급대 전문화 향상(시비)	939	728			211	22.5%	
13	재난대응과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	52	47			5	10.0%	
14	재난대응과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3,139	3,207			112	3.5%	
15	재난대응과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8,184	7,579	119		486	5.9%	
16	예방과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1,435	1,329			106	7.3%	
17	예방과	몸짱 소방관 달력 기부행사	42	38			4	10.4%	
18	안전지원과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20,937	19,916	280		741	3.5%	
19	안전지원과	후생복지 지원	11,418	11,262			156	1.3%	
20	안전지원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6,391	15,804			587	3.5%	
21	안전지원과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시비)	4,262	4,077			185	4.3%	
22	현장대응단	재난현장 활동지원	334	289			45	13.6%	
23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5,501	5,273			228	4.1%	
24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	4,222	4,050			172	4.0%	
25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 유무선통신시스템 운영	5,035	4,773			262	5.2%	
26	서울종합방재센터	기본경비(소방정책비계정)	1,261	1,069			192	15.2%	
27	소방학교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	2,921	2,521			400	13.7%	
28	소방학교	소방학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1,496	1,365			131	8.7%	
29	소방학교	소방학교 사이버콘텐츠 개발 및 훈련물품 구입	528	475			53	10.1%	
30	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운영	2,449	2,337			112	4.5%	
31	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운영	1,708	1,583			125	7.3%	
32	특수구조단	기본경비(소방정책비계정)	1,742	1,487			255	14.6%	

-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은 예산현액 10억 36백 만원 중 1억 31백 만원(12.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주요 사유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여 서울시 인력개발과에서 추진하던 소방공무원 중 퇴직준비교육이 ‘23년부터 소방재난본부 자체 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대상자 111명을 대상으로 재취업에 필요한 전문학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3년부터 예산을 편성(8천 8백 만원) 하였으나 신청인원이 36명으로 저조하여 지원비 6천 2백만원이 미사용된 것으로,
- 이처럼 신청인원이 저조한 것은 사전에 교육지원에 필요한 수요조사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향후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개선사항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다음으로, 소방청 주관 전문기관 위탁교육 중 소방사다리차 운영능력 교육과정 배정 인원(44명→25명)이 일부 축소(1천 8백 만원)한 것과, 특별 구조훈련(산악, 수난, 도시탐색 등) 시 자체 훈련시설(다목적인명구조훈련장, 서울소방학교 훈련시설)의 이용 증가로 외부 훈련시설(수영장, 폐차장 등) 사용이 감소(1천 1백만원)한 것도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이라 하겠음.
- 소방행정과 ‘기본경비(소방정책비계정)’는 예산현액 233억 26백만원 중 17억 13백만원(7.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필수 공무출장 외에는 외부 출장을 자제하고 있어 국내 여비 지급액 11억 6천만원이 미집행되었고 공상자 감소 및 직원동호회 활동의 축소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천 4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최근 3년간 국내여비 집행현황([표])을 보면 지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여비사용 규정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할 것임.

[표] 최근 3년간('23~'21) 국내여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23	2022	2021
예산현액	4,181	4,238	4,520
지 출 액	3,017	2,335	2,278
집행잔액	1,164	1,903	2,242

- '인력운영비(인건비계정)'는 소방공무원 보수 관련 예산으로 예산현액 7,084억 37백 만원 중 137억 17백 만원(1.9%)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표]참조)

[표] 2023년 인력운영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통계목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사 유
총 계			708,437	694,720	98.1	13,717	1.9	
1	인력 운영비	보수	528,876	516,881	97.7	11,995	2.3	집행잔액
2		직급보조비	16,133	16,125	99.9	8	0.1	집행잔액
3		성과상여금	25,737	25,392	98.7	345	1.3	집행잔액
4		연금부담금	115,589	115,421	99.9	168	0.1	소방재난본부 기관부담금
5		국민건강보험금	22,102	20,901	94.6	1,201	5.4	소방재난본부 기관부담금

-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는 편성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나 정년퇴직자의 증가로 보수와 성과상여금 등의 집행액이 감소함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차년도 인력 변동 예상 상황과 예상퇴직인원에 대한 사전조사 등을 통해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표] 2021 ~ 2023년 휴직자 변동현황

(단위:명)

기준시기	퇴직	승진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일반)	기타휴직
합계	241	3,129	116	1054	35	109	69
2023	93	1,076	28	353	16	28	33
2022	74	1,115	34	383	11	46	20
2021	74	938	54	318	8	35	16

- ‘인력운영비(소방정책사업비)’는 소방공무원 외 일반직 및 기타 인력 보수 관련 예산으로, 예산현액 238억 52백 만원 중 19억 37백 만원(8.1%)의 집행잔액이 발생함.([표]참조)

[표] 2023년 인력운영비(소방정책사업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통계목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비용내역		
						비용액	비율(%)	사유
총계			23,852	21,915	91.9	1,937	8.1	
1	인력 운영비	보수	3,322	2,936	88.4	386	11.6	조직개편으로 인한 불용
2		기타직보수	7,159	6,272	87.6	887	12.4	신규임용자 교육인원 감소
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0,424	9,806	94.1	618	5.9	집행잔액
4		직급보조비	232	204	87.9	28	12.1	조직개편으로 인한 불용
5		성과상여금	227	223	98.2	4	1.8	집행잔액
6		연금부담금	2,224	2,224	100	-	-	-
7		국민건강보험금	264	250	94.7	14	5.3	소방재난본부 기관부담금

-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 종식 후 응급구조사 양성 과정의 재개로 교육일정이 변경(4개월→6개월)되어 당초 예정되었던 공채임용 신규교육대상자가 540명에서 185명 대폭 감소한 355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차액 7억 58백만원이 발생하였는데,
- 2022 회계연도에도 공채임용 신규교육대상자가 당초 540명에서 202명 감소하여 집행잔액(14억 56백만원)이 발생한 바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 신규 소방인력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필요인력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반면 지속적인 신규 소방관 감축으로 자칫 소방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하겠음.
- 그 외 「2023년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속 민방위정보통제소가 비상기획관으로 조직개편(일반직 21명, 전문경력관 1명, 청원경찰 9명, 23.10.19.字)되어 민방위정보통제소 인력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11월, 12월분이 불용(3억 4천만원) 처리되었음.
- ‘한강안전시스템 운영’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총액 25억 31백만원 중 3억 37백만원(13.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표] 2023년 한강안전시스템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통계목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사유
총 계		2,531	2,193	20.4	336	13.3	
1	사무관리비	3.6	3.2	89.3	0.38	10.8	항온항습기 수리 후 집행잔액
2	공공운영비	1,029	941	91.5	87	8.6	전기,전화요금 등 납부 및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3	시설비	1,498	1,249	83.4	249	16.7	가양대교 신규, 동작, 반포대교 교체 사업 낙찰차액

- 한강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CCTV 영상감시장비를 가양대교에 신규 설치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동작, 반포대교에 대한 유지보수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낙찰 차액(2억 49백만원)과
- 한강교량 CCTV 통합관제센터 항온항습기 수리비 집행 후 잔액, 공공운영비 납부 및 유지관리 용역 낙찰 차액으로 인한 불용액(8천 8백만원)이 발생한 것임.([표]참조)

[표] 한강안전시스템 설치현황(24.6. 기준)

(단위:백만원)

설치연도	설치교량	설치예산 (백만원)	CCTV 카메라					비상벨 방송	경광등	교 체
			계	고정형	회전형	열화상	어안			
2012년	마포대교	1,210	65	49	16	-	-	16	16	'19,11.(再 구축)
2012년	서강대교		52	36	16	-	-	16	16	
2015년	한강·한남대교	855	136	64	32	8	32	32	32	'22. 9.(교체)
2016년	반포·동작대교	1,197	136	64	32	8	32	32	32	'23. 8.(교체)
'16~17년	광진대교	480	32	22	10	-	-	10	10	'22. 5.(교체)
'16~17년	천호대교		30	20	10	-	-	10	10	'22. 5.(교체)
2017년	잠실·영동대교	1,474	136	64	32	8	32	32	32	'24.(교체 예정)
2022년	양화·원효·동호대 교	2,417	168	96	48	24	-	-	48	
2023년	가양대교	1,498	56	32	16	8	-	-	16	

- ‘구급대 전문화 향상(시비)’는 예산현액 9억 39백만원 중 2억 11백만원(22.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표]참조)

[표] 2023년 구급대전문화향상(시비)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번	통계목	세부사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사유
총 계			939,714	728,262	20.4	211,451	22.5	
1	사무 관리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573,495	535,245	93.3	38,250	6.7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구급대 체인력 채용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2		구조·구급대원 예방접종	294,619	138,844	47.1	155,775	52.9	구조·구급대원의 접종 미희망 및 기항체보유자의 미접종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3		각종 세이버 배지 및 인증서 제작	20,000	20,000	100	0	0	-
4		구조·구급정책 협의회 참석 수당 등	51,600	34,173	66.2	17,427	33.8	전문강사 교육 수당 국비진 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미집행

- 주요 사유는 구조·구급 대원을 대상으로 ‘23년부터 B형간염, 수두, MMR(홍역,볼거리,풍진), 항체검사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당시 백신접종에 대한 불안감 및 기항체 보유자의 미접종 등의 사유로 예방접종 인원이 당초 예상한 인원보다 대폭 줄어든 것에 기인한 것으로,([표]참조)
- 소방대원의 예방접종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구조·구급대에게 혹시 모를 2차 감염 등을 막아 대원 개인은 물론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이해되는 바,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적극 장려해야 할 것임.

[표] 2023년 구조·구급대원 예방접종 현황

(단위:회/명)

구분	B형간염	수두	MMR	항체검사
접종횟수(회)	1,258	1,507	1,426	2
접종인원(명)	559	822	858	2

- 다음으로는, '24. 2월부터 시행한 병원 전단계 중증도분류 (Pre-KTAS) 사전교육(23.9~23.12.)을 위해 당초 시비로 편성하였던 전문강사 교육 수당(2천 9백만원)¹⁴⁾이 '23년 9월에 국비로 변경되고 구급지도협의회 및 구급활동평가토론회¹⁵⁾ 등의 축소 운영(2회 → 1회)으로 회의 횟수 및 수당지급액이 감소함에 따른 것과
-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과 관련해 보직변경, 휴직 및 임신 등¹⁶⁾ 등으로 건강검진을 미실시한 대원의 증가로 집행잔액(2억 11백만원)이 발생한 것임.
-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은 예산현액 31억 39백만원 중 1억 12백만원(3.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매년 초 의용소방대원 자녀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

14) 구급전문강사 초빙 교육수당 = 600,000원 * 3일*4권역*4분기(회) = 28,800천원

15)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구급지도협의회 운영) 제1항 구급지도협의회는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16) 휴직 등 인한 구급대책인력 운영 : 구급출동 업무보조 57명 운영(1급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자격자)

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¹⁷⁾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장학금 및 학자금 대상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자의 일부가 조례에서 정한 지급 제외 대상인 타장학금 이중 수령, 휴학, 자퇴 등에 해당되어 미지급 잔액(4천 6백만원)이 발생하였음.([표]참조)

[표] 2023년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미지급) 현황

(단위:명)

년 도 별		지급 대상	미지급				
			휴학	퇴학 (자퇴)	타장학금 수령 (미지급)	타장학금 수령 (환수)	기타
2023	상반기	99			1	2	3
	하반기	100	5	2	14		4
2022	상반기	102		1(환수)	6		
	하반기	93	3		9	1	
2021	상반기	105			11		2
	하반기	94	1		8	2	6

- 이처럼 매년 미지급 대상자 및 환수하는 인원이 발생하는 것은 타 장학금 수령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의용소방대지원경비에서 미집행(6천 5백만원)이 발생한

17) 제19조(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1. 지급대상자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2. 지급인원: 자녀 1명
 3. 지급금액: 고등학생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것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진행하는 불조심 강조의 달 활동, 연말연시 등 각종 안전 행사, 화재취약지역 순찰 등에 동원되는 의용소방대의 지원 및 인원에 대한 사전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이 역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음.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는 예산현액 81억 84백만원 중 4억 86백만원(5.9%)의 집행잔액이 발생함.([표]참조)

[표] 2023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통계목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률(%)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사유
총계			8,184,214	7,579,690	118,732	92.6	485,788	5.9	
1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사무관리비	177,000	175,642		99.2	1,357	0.8	집행잔액
2		공공운영비	72,600	70,934		97.7	1,665	2.3	집행잔액
3		시설비	7,934,614	7,333,114	118,732	92.4	482,766	7.6	집행잔액

- 주요 사유는 소방재난본부가 소방용수시설 보수 및 설치를 위해 8개의 수도사업소로 예산을 재배정(48억 99백만원)하였으나 서부수도사업소(84.55%), 동부수도사업소(57.45%)에서 소방용수시설 보수 및 설치 공사를 후 순위로 추진하여 공사 부진에 따른 3억 62백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 이는 소방재난본부의 재배정 예산 관리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였다 보여짐으로 향후 소방용수시설의 공사지연이 없도록 각 수도

사업소에게 전화, 방문, 공문발송 등을 통한 분기별 공사 진행사항 및 예산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표] 2023년 수도사업소별 집행내역

(단위:천원)

연번	기관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율	내용
	계	4,899,124	4,496,228	402,894	91.8%	
1	중부수도사업소	1,020,411	1,020,411	0	100.0%	각 자치구 고장 소화전 보수 및 노후 밸브 교체, 포장도로 굴착 복구비 납부
2	서부수도사업소	541,148	457,524	83,624	84.6%	
3	동부수도사업소	655,279	376,452	278,827	57.5%	
4	북부수도사업소	503,343	502,697	646	99.9%	
5	강서수도사업소	530,029	520,748	9,280	98.2%	
6	남부수도사업소	587,560	557,497	30,063	94.9%	
7	강남수도사업소	674,626	674,236	390	99.9%	
8	강동수도사업소	386,728	386,663	64	99.9%	

[표] 최근 3년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실적

(단위:건)

총계		'23년		'22년		'21년	
설치	보수	설치	보수	설치	보수	설치	보수
60	2,408	26	784	19	859	15	765

- ‘후생복지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14억 18백만원 중 1억 56백만원(1.3%)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주요 사유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의 경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건강진단’과 대형화재 및 유해물질접촉, 실화

재 훈련 등의 특수 활동에 따른 '수시건강진단', 정기 또는 수시 진단 이상소견 진단 시 실시하는 '정밀건강진단'으로 분류가 되는데, '23년도 '수시건강진단' 실시 건수가 감소하여 예산 37억 84백만원 중 36억 4천만원 사용하고 1억 38백만원(3.6%)을 불용한 것임.

- 소방공무원 건강검진의 경우 직무 수행 능력 유지, 직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예방, 그리고 직장 내 건강관리 문화 형성에 중요한 사업으로 자칫 정기누락 되는 인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2023년도 수시/정밀건강진단 추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검진대상	2023년도 추진실적	
		지원인원	지출액
수시건강진단	대형화재 발생, 정신질환 위험 등 발생 시	항공대원 신체검진 12명 유해물질 노출 2명	2,620천원
정밀건강진단	정기/수시진단 결과 이상소견 발생 시	이상소견자 정밀진단 39명	2,126천원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사업은 공공운영비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구성되는데 예산 현액 163억 91백만원 중 5억 87백만원(3.5%)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이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및 전년도 전·출입자 정산 비용으로 전체 7,567명(남자 6,823명/여자 744명) 기준으로 26억 76

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가입 인원이 7,378명(남자 6,639명 /여자 739명)으로 감소하고 남자 보험료 가입 단가(369천원→316천원)가 낮아짐에 따른 것이며,

[표] 보험료 예상액 및 보험료 지출액 비교

(단위: 천원)

예산 산정시 보험료 예상액(예산편성액)				계약 체결시 보험료(지출액)			
구분	인원수	단가	금액	구분	인원수	단가	금액
남자	6,823	369	2,517,005	남자	6,639	316	2,099,677
여자	744	214	159,216	여자	739	162	119,718
합계			2,676,221	수수료			14,659
				전입·전출자 전년도 정산금액			96,345
				합계			2,330,399

-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 선택적복지포인트 및 다자녀출산¹⁸⁾에 따른 복지포인트 지급과 관련해 7,586명 기준으로 137억 1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배정인원은 7,473명(134억)으로 감소함에 따른 것임.
- 단체보험 가입과 복지포인트 지급의 경우 정해진 단가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편성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인원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해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은 예산현액 29억 21백만원 중 4억원(13.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18) 다자녀출산지원비 :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 지원

- 주요 사유로는 실화재훈련 위탁교육비 1억 4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학교 내 간이실화재훈련시설을 통해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당초 예상하였던 신규 교육대상자가 540명에서 185명 감소한 355명으로 변경되면서 따른 교육생 급식비(1억 35백 만원)와 교재발간 및 구입비(2천 2백 만원)가 일부 불용되었기 때문임.([표]참조)

[표] 2023년 인재채용 및 양성 중 (사무관리비) 미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통계목	세부사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사유
계			2,787	2,386	85.6	400	13.7	
1	사무 관리비	실화재훈련 위탁교육비	144	0	0	144	100	간이훈련시설 설치 후 자체교육 실시
2		교육생 급식비	698	563	80.6	135	19.4	변경계약 [교육생 감소로 인한]
3		교재발간 및 구입비	132	110	83	22	17	
4		지출잔액	1,812	1,714	95	99	5	집행잔액

다) 예산이용(결산서 p.61)

- 예산의 이용은 없음.

라) 예산전용(결산서 p.62)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19)에 의해 각 정책사업 내의

19)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전용([표]참조) 2건에 2억 29백만원 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표] 2023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

(단위: 천원)

연 번	과 목			전용금액		승인 일자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2건)				298,415	298,415		
1	소방재난 본부 소방행정과	소방활동지원	사무관리비	4,307		'23.03.28.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송파소방서 식당조리원)
		소방활동지원	배상금등		4,307		
2	소방재난 본부 소방행정과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	294,108		'23.12.18.	공무원 수당 등 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부족분 예산 전용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294,108		

○ 예산 전용의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소방활동지원’은 송파소방서 방이119안전센터 조리원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배상금(4백3십만원)을 지급하고자 이를 전용한 것으로

- 당초 중앙지법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하였으나, 이후 원고의 항소심에 따른 2심에서 서울시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어 미지급 퇴직금 일부는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원금 및 이자에 대한 430만원을 원고에게 '23.3.31. 지급한 것임.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표] 송파소방서 식당 조리원 퇴직금 등 청구 소송 관련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소송제기 (‘15.09.03.)	- 송파소방서 방이119안전센터 구내식당 조리원 퇴직금 등 청구 (※ 미지급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임금 등을 서울시에 청구)										
중앙지법 1심 판결 (‘16.09.29.) 서울시 승소	- 근로관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조리원) 패소 판결										
원고 항소 (‘16.10.25.)	- 원고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중앙지법 2심 판결 (‘18.04.10.) 서울시 패소	- 서울시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인정 - 원고 청구 중 미지급 퇴직금 일부 인정 (※ 기타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임금 등 청구는 불인정)										
서울시 상고 (‘18.04.27.)	- 2심의 근로계약 존부에 관한 법리 및 피고 위임 여부 사실 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대법원 상고 기각 (‘23.02.02.) 서울시 패소	- 2심의 근로관계 존부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었음을 이유로 상고 기각함										
판결금 지급	- (판결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2,291,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8.10.부터 2018.4.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산마련) 「소방활동지원」 사무관리비를 배상금등으로 예산전용 ※ 소송 종료일정 및 판결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본 소송과 관련한 배상금 지급예산 미편성 - (지급금액) ’23.3.31.기준 4,306,138원을 지급 완료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원금</th> <th>이자1(5%) (2015.8.10.~2018.4.10.)</th> <th>이자2(15%) (2018.4.11.~2023.3.31.)</th> <th>총계</th> </tr> </thead> <tbody> <tr> <td>금액(원)</td> <td>2,291,334</td> <td>305,720</td> <td>1,709,084</td> <td>4,306,138</td> </tr> </tbody> </table>	구분	원금	이자1(5%) (2015.8.10.~2018.4.10.)	이자2(15%) (2018.4.11.~2023.3.31.)	총계	금액(원)	2,291,334	305,720	1,709,084	4,306,138
구분	원금	이자1(5%) (2015.8.10.~2018.4.10.)	이자2(15%) (2018.4.11.~2023.3.31.)	총계							
금액(원)	2,291,334	305,720	1,709,084	4,306,138							

- 이처럼 소송의 경우 처리 일정 및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해당 예산전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본 민사소송의 경우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향후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한 소송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음.

○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사업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23.1.6.)으로 2023년 12월분 지급 부족분 2억 94백 만원이 발생하여 전용하였음.

- 이는 '23.1.6.부로 개정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직급보조비의 단가가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되었으나, 당초 '23년도 예산 편성 당시 해당 인상분이 미 반영되어 12월 직급보조비 13억 6천만원 중 2억 94백만원이 부족하여 이를 전용한 것으로,
-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예산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만 본 예산전용 건은 직급보조비가 인상되는 것을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조치라 하겠음.

[표] 소방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개요

(단위: 천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조정내역
소방경, 소방위	175,000원	185,000원	+ 10,000원
소방장	165,000원	180,000원	+ 15,000원
소방교, 소방사	155,000원	175,000원	+ 15,000원

[표] 2023년 직급보조비 집행현황 및 부족예산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①	집행액 ②	집행잔액 ③=①-②	'23.12월분 소요예산④	부족예산 ⑤=④-③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15,839	14,773	1,066	1,360	294

마) 예산이체 (결산서 p.63)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20)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20)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운영중이던 ‘민방위정보통제소’가 비상기획관에 이관(‘23. 10. 19.)되어 ‘민방위 정보 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비’ 관련 통계목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4건과 ‘기본경비’ 관련 통계목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3건으로 총 7건에 대한 24억 1천만원을 이체함.([표]참조)
- 이는 지난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시장이 의회(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51호)」²¹⁾이 원안가결되어 동 조례 제36조에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관사무 중 민방위정보통제소의 운영, 민방위정보 전파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비상기획관 소관업무로 이관(23. 10. 19.)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51)

제34조제1항 중 “재해와 재난, 민방위정보를 총괄 지령하고 지휘 통제할 수 있도록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36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표] 2023회계연도 예산이체 내역

(단위: 천원)

연 번	과 목			이체금액		승인 일자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7건)				2,410,741	2,410,741		
1	서울종합 방재센터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사무관리비	500		'23.10.19.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 이관(서울종합방재센터→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사무관리비		500		
2	서울종합 방재센터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공공운영비	673,954		'23.10.19.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 이관(서울종합방재센터→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공공운영비		673,954		
3	서울종합 방재센터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전산개발비	39,500		'23.10.19.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 이관(서울종합방재센터→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전산개발비		39,500		
4	서울종합 방재센터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시설비	1,646,800		'23.10.19.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 이관(서울종합방재센터→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시설비		1,646,800		
5	서울종합 방재센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424		'23.10.19.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 이관(서울종합방재센터→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424		
6	서울종합 방재센터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46,863		'23.10.19.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 이관(서울종합방재센터→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46,863		
7	서울종합 방재센터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00		'23.10.19.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 이관(서울종합방재센터→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00		

바) 예산변경(결산서 p.64)

○ 예산의 변경은 없음.

사) 예비비(결산서 p.67)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²²⁾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22)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
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
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총 1건에 5억 11백만원을 사용하였음.

[표] 예비비 사용 현황

(단위: 천원)

연 번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지출 일자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1건)				511,540	511,540	0		
1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활동지원	배상금등	511,540	511,540	0	'23.04.28.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국일고시원 화재)

○ ‘소방활동지원’ 사업 배상금은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18.5.15.)²³⁾ 관련하여 피해자 유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민사소송 최종 판결(대법원 2022다 302992, ‘23.3.16.)’²⁴⁾에 따라 배상금 원금 4억원과 발생이자 1억 11백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5억 11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 서울시와 공동 배상토록 한 고시원 업주의 행방이 불명한 상황에서 원금의 연 12% 이자율이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

- 발생일시 : 2018. 11. 9.
- 발생장소 :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로 109 국일고시원
- 피해현황 : 사망 7명, 부상 11명
- 화재원인 : 전기난로 과열(추정)

24) 「대법원 2022다 302992 손해배상」 판결주문

“피고 구00, 서울특별시는 *공동하여 원고 조00, 유00에 각 150,000,000원, 원고 김00에게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11.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 원고들의 피고자 4인중 허필연·허창화는 청구를 기각하고, 서울특별시(장) 및 구순욱에 대해서만 지급 판결

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사료되나, 향후 고시원 업주에게 구상금 청구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표] 종로구 고시원 화재 손해배상 소송 관련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소방특별조사 (18.05.15.)	- 종로소방서에서 종로구 ○○고시원 소방특별조사 실시																														
화재 발생 (18.11.09.)	- ○○고시원 화재 발생으로 사망자 발생																														
소송제기 (21.09.28.)	- 사망자 유족(3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장 접수 (※ 서울시, 고시원 건물주, 고시원 업주 등 4명을 피고로 소송 제기)																														
중앙지법 1심 판결 (22.07.13.) 서울시 패소	- 종로소방서 소방특별조사 담당 소방공무원들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 -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화재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 서울시와 고시원 업주가 공동하여 손해배상할 것을 판결(건물주 제외)																														
서울시 항소 (22.07.26.)	- 서울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서울고등 2심 판결 (22.11.10.) 서울시 패소	- 종로소방서 소방특별조사 담당 소방공무원들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 -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화재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 우리 시와 고시원 업주가 공동하여 손해배상할 것을 판결(건물주 제외)																														
서울시 상고 (22.11.30.)	- 서울시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대법원 상고 기각 (23.03.16.) 서울시 패소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하여 상고 기각																														
판결금 지급	<p>- (판결금액) “고시원 업주, 서울특별시는 공동하여 원고 조**, 유**에게 각 150,000,000원, 원고 김**에게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11.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p>- (법률자문) 원고가 고시원 업주가 아닌 우리 시에게만 판결금 전액을 청구하여 이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바, 고시원 업주와 우리 시는 부진정연대책무 관계이므로 우리 시가 우선 전액을 배상하고 향후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고시원 업주와 책임 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에 맞는 금액을 업주로부터 받을 것을 자문함.</p> <p>- (예산마련)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활용하여 판결금액 지급 ※ 소송 종료일정 및 판결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본 소송과 관련한 배상금 지급예산 미편성</p> <p>- (지급금액) '23.4.28.기준 총 511,539,722원 지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연번</th> <th>성명</th> <th>총계</th> <th>원금</th> <th>이자1(5%) (18.11.9.~22.7.13.)</th> <th>이자2(12%) (22.7.14.~23.4.28.)</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조**</td> <td>191,827,396원</td> <td>150,000,000원</td> <td>27,575,342원</td> <td>14,252,054원</td> </tr> <tr> <td>2</td> <td>유**</td> <td>191,827,396원</td> <td>150,000,000원</td> <td>27,575,342원</td> <td>14,252,054원</td> </tr> <tr> <td>3</td> <td>김**</td> <td>127,884,930원</td> <td>100,000,000원</td> <td>18,383,561원</td> <td>9,501,369원</td> </tr> <tr> <td colspan="2">합계</td> <td>511,539,722원</td> <td>400,000,000원</td> <td>73,534,245원</td> <td>38,005,477원</td> </tr> </tbody> </table>	연번	성명	총계	원금	이자1(5%) (18.11.9.~22.7.13.)	이자2(12%) (22.7.14.~23.4.28.)	1	조**	191,827,396원	150,000,000원	27,575,342원	14,252,054원	2	유**	191,827,396원	150,000,000원	27,575,342원	14,252,054원	3	김**	127,884,930원	100,000,000원	18,383,561원	9,501,369원	합계		511,539,722원	400,000,000원	73,534,245원	38,005,477원
연번	성명	총계	원금	이자1(5%) (18.11.9.~22.7.13.)	이자2(12%) (22.7.14.~23.4.28.)																										
1	조**	191,827,396원	150,000,000원	27,575,342원	14,252,054원																										
2	유**	191,827,396원	150,000,000원	27,575,342원	14,252,054원																										
3	김**	127,884,930원	100,000,000원	18,383,561원	9,501,369원																										
합계		511,539,722원	400,000,000원	73,534,245원	38,005,477원																										

아) 차년도 사고이월²⁵⁾(결산서 p.155~158)

- 2023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 등 4개 사업, 4건으로 사고이월 대상사업 예산현액 319억 36백만원 대비 2.3%인 7억 26백만원([표]참조)을 사고이월 하였음.

[표] 2023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	이월 사유
합 계		31,936	726	1,172	2.3	
소방행정과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	2,065	37	308	1.8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지구 도시정비계획 변경으로 구. 수송초 해체에 따른 추가 발굴 조사 비용 및 문화재 발굴유구 창고보관료 사고이월
재난관리과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8,184	119	111	1.4	수도자재관리센터의 사업 추진(소화전 원형받침 철개 물품) 지연에 따라 계약상 납품기한 미도래(2일 초과)로 인한 사고이월
안전지원과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20,937	280	741	1.3	이동안전체험차량(1대), 구조버스(2대) 출고의 지연과 순차적으로 특장 공정도 지연되어 연내 납품불가로 사고이월
안전지원과	산불전문 진화차 보강	750	290	12	38.7	소방청에서 7개 소방본부 산불진화차를 통합구매로 추진 중 업체의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

-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의 경우, 종로구청과 종로소방서를 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총 1,421억원을 투입하여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종로소방서가 입주하는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장기계속사업임.

25) 사고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서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말함.

- 당해연도에 예산현액 20억 65백만원 중 집행액 17억 2천만원 중 3억 8백만원(14.9%)이 불용되고 1.8%인 3천 7백만원을 사고이월함.

[표]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 146-2)
○ 사업기간 : (변경전) '19. 01월~'25. 12월 ⇒ (변경후) '19. 01월~'27. 12월 ⇒ 변경사유 : 舊 수송초등학교 철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성능위주 설계 진행 등으로 사업일정이 변경되었음
○ 소요예산 : 1,421억 원(건축 950억, 상황실 구축비 등 471억) [당초계획] 754억원 (건축 489억원, 상황실 등 전산시스템 265억원)
○ 규 모 : 15/5층, 연면적 22,235㎡, 부지면적 1,987㎡ [당초계획] 지상 13층, 지하 1층, 연면적 15,944㎡, 부지면적 1,987㎡
○ 입주부서 :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종로소방서 ※ 종로구 통합개발 규모
- 대지위치 : 종로구 삼봉로43 (현 종로구청사, 종로소방서 부지)
- 사업규모 : 16/5층 / 연면적 83,564㎡/ 부지면적 8,622㎡
- 입주기관 : ㄱ 종로구청·구의회·보건소 ㄴ 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
- 건축물용도 : 공공청사, 문화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 전체사업비 : 4,193억원 (서울시 1,421억원, 종로구 2,772억원)

- 사고이월 사유는 당초 '23년도에 (舊)수송초등학교 보존건물 철거 및 정비계획 변경²⁶⁾에 따라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와 종로구 통합청사 건립 설계 및 문화재 관련 유구전시관 기본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 문화재 발굴조사 지연으로('23.4.7. 완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한 '수송 도시정비형 재배발구역 제 1-3지구 정비계획 변경' 심의

26)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 방침서 사업일정 변경보고(소방행정과-33062) 2022.8.17.」

가 '23.11.15.에 조건부 의결²⁷⁾되면서 당초 추진하려던 보존건물 철거부지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와 합동청사 실시설계가 '24년으로 연기되었고,

- 이로 인해 유구전시관 기본 설계 용역비를 불용하는 한편, 매장 문화재 추가 발굴조사가 '24년까지 연장됨에 따른 발굴 조사 비용 및 문화재 발굴유구 창고보관료를 이월한 것임.
 -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21회계연도와 2022회계연도에도 철거공법 변경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연기 및 보존방안 결정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 이같은 연례적인 사고이월 발생은 사업에 대한 신뢰를 의심케 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당부된다 하겠다.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은 유사시 신속한 급수체계를 유지함으로써 효과적인 화재진압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예산현액 81억 84백만원 중 1.4%인 1억 19백만원을 사고이월함.

27)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 1-3지구 정비계획 변경」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2023.11.15.)

-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사복시터가 출토되어 이를 보존하기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수송초 철거 필요
- 수송초등학교 건축물의 안전등급 평가(21.11.22) 결과가 E등급으로 판정되어 붕괴 위험이 높으며 보강하여 재사용 시 공간의 효용성 및 경제성 저하
- 수송초(근대건축물) 보존을 위해 수복방식을 VRAR, 기록전시 및 영상상영관(문서, 사진 등)을 설치

- 사고이월 사유는 각 수도사업소에서 소화전용 원형받침을 통합 구매하고자 수도자재관리센터를 통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²⁸⁾ 2 단계 경쟁으로 발주하였으나 발주시기가 '23.11.13일로 연말에 이루어짐에 따라 연내 물품 납품이 어려워져 사고이월 한 것임.

- 각 수도사업소가 통합하여 일괄로 구매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이를 이유로 연말이 되어서야 발주를 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과 '산불 전문 진화차 보강'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209억 37백만원 중 1.3%인 2억 8천만원과 예산현액 7억 5천만원 중 38.7%인 2억 9천만원을 사고이월함.

- 소방차량구매의 경우, 특장차 제작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업체는 차량 제작을 위해 자동차 판매업체(현대, 대우, 볼보 등)로부터 차량을 구매하여 소방펌프, 배관, 사다리 등 특장 부품 장착 등으로 개조하게 되는데,

- '22년 당시 차량 반도체 수급 지연으로 '23년도 출고량이 대폭

28)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한다.

감소하면서 자동차 판매업체로부터 구조버스로 활용되는 차량(카운티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후공정인 특장 제작에 차질이 발생하여 사고이월하게 된 것임.

- 여기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은 사용되는 관급자재(발전기 20kw)의 해외 공급 지연과 차체 확장을 위한 신공법 적용(유압식→전동)기술의 문제²⁹⁾로 재설계(시공)에 따른 생산 지연이 발생하여 이월하였고
- ‘산불 전문 진화차 보강’ 사업은 소방청이 7개 시도(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창원, 제주) 소방본부에서 통합 구매 추진 중인 계약으로, 납품기한(2023.6.27.~2024.6.26.)이 도래하지 않아 7개 시도 소방본부 모두 사고 이월된 사항임.
- 소방차량의 경우 화재 및 재난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소방자원으로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부족분에 대한 보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업체와 유기적이고 원만한 협업을 통해 제작과정을 단축시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 신규차량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 기존에 운용 중인 소방차량에 대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출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임.

29) 당초 유압을 이용한 방식은 진동문제와 느린 전개속도로 인해 전동방식으로 채택하였으나 시공 결과 전동기의 무게 등으로 확장부분이 아래로 처지는 안전상 결함이 발견되어 이를 전면 철거 후 다시 유압식으로 변경함. 다만, 업체측의 과실로 별도의 비용 발생은 없음.

[붙임1]

- 소방재난본부 결산검사 권고사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 해당없음